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 산업 육성, 소비자 보호가 입법목적이며, 특히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원료의 차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 등록거절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그 결과,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저차 가공품에 한정되어 등록이 제한적이며, 최근 3년간 등록실적이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국내산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거절 사유의 세부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산가공품 등록 거절 제외 단서 조항 신설(안 제15조제1호의2)

-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수산가공품은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토록 함

* (현행) 농수산가공품은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사용

(개정)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제9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11.3~12.13)

※ 의견조회, 규제심사, 입법예고(10월~), 법제처 제출(12월~)

대통령령 제 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 1. (생 략)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법 제32조제9항~ 1. (현행과 같음)
1의2. 해당 품목이 농수산물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해당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서 가공된 것이 아닌 경우	1의2. ----- ----- ----- ----- -----아닌 경우. 다만, <u>국내에서 생산된 회유성어류를 주원료로 하여 대상지역에서 가공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u>
2.~5. (생 략)	2.~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연 락 처	(044) 200-5487